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2-66호
2022. 9. 29.(목)

차 례

공 고(1)

-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공고 제2022-944호) 1

공 람									
--------	--	--	--	--	--	--	--	--	--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38조 규정에 의거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가. 공시기준일: 2022년 6월 1일
 - 나. 대상: 대전 대덕구 송촌남로24(송촌동 249-13)외 65호
 - 다.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 라. 열람장소: 대덕구청 세정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2.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가. 신청기간: 2022. 9. 29. ~ 10. 28.
 - 나. 신청인: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다. 신청방법: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대덕구청 세정과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제출
 - 라. 결과통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끝.

이의신청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2022. 1. 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2022. 6. 1. 기준으로 주택특성 조사를 하고, 한국부동산원 2인의 검증으로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

대덕구청 세정과 및 일사편리 홈페이지(<http://kras.go.kr>)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